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1가합538157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한솔, 송민경, 고관영

피고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계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문기

변론 종결2024. 10. 24.

판결 선고2024.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16,030,000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315,03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라 한다. 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F와의 사이에 'G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H와의 사이에 '인천 I복합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회사들이다(이하 위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7. 6. 28. F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97,457,000,000원(A 계약금액 73,257,000,000원, 피고 계약금액 24,2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도급계약서

창원시 의창구 J,K,L BL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급인 F(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A(이하 "을1"이라 한다) 및 피고(이하 "을2"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며, (후략)

이 사건 제1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사건 제1도급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도급계약서 및 이 사건 제1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특수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 사건 제1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

제2조["본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

"본사업"은 "갑"이 지정하는 신탁사(이하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위 "신탁사"와 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단,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을"에 대한 제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한다.

제6조[공동 수급 이행 조건]

"을1"과 "을2"는 공동 수급인으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 시공사로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① "을1"의 업무 및 의무

1. "을1"의 공사 범위는 토목, 건축, 조경 및 해당 공정 수행을 위한 가설공사(단, 제5조 "을2"의 업무범위 이외의 모든 공사)이다.

② "을2"의 업무 및 의무

2. "을2"의 공사 범위는 기계, 소방, 전기, 통신공사 및 해당 공정 수행을 위한 가설공사(단, 제4조 "을1"의 업무범위는 제외)이다.

2) F는 이후 F를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를 3순위 우선수익자, A를 4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M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M이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사업의 사업주체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제1공사의 진행 경과

1) A는 2017. 8. 31.경 이 사건 제1공사에 착수하였고, 2017.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전체 예정공정표를 송부하였다.

2) 피고는 2017. 11. 10. A에게 양 사의 공정 비교표를 송부하였는데, 위 비교표에는 '공사일정이 전체적으로 4개월 정도 공기가 부족하여 공정협의를 공정별팀 운영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은 2018. 6. 12.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흙막이 지보공 수평 스트럿의 과도한 변형으로 흙막이 지보공 붕괴 위험이 높으므로, 전문 토질기술사에 의한 정밀

진단 실시 후 수평·변위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보강계획 등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전면작업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제1작업중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7. 2. 안전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위 명령을 해제하였다.

라. 이 사건 제1공사의 준공 및 공사비 정산 합의 등

- 1) 이 사건 제1공사는 2019. 8. 30. 준공되었다.
- 2) 한편 이 사건 제1공사 완료 후 공사비 정산과 관련하여, F는 2019. 9. 9. A에게 '2019. 9. 5. 피고로부터 귀사의 선행공정 지연으로 인한 필수 돌관비용이 발생하였다는 문서를 전달받았는데, 귀사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A는 2019. 9. 20. F에게 '필수 돌관비용에 대한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3) 피고는 2019. 11. 8. A에게 '선 공정(건축, 토목) 150일 공기지연으로 인해 돌관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돌관공사비 청구 대비 집행계획 설명서를 송부하였고, A는 2020. 1. 3. F에게 '(돌관공사 기간을) 평균 23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피고가 돌관공사비 기간을 6개월(180일)로 산정한 근거1)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4)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F는 2020. 1. 20.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비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제1정산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정산합의서

F(이하 "갑"이라 한다)와 A(이하 "을1"이라 한다) 및 피고(이하 "을2"라 한다)는 본합의서의 아래 주요사항에 근거하여 "N(창원시 의창구 O)"의 최종 공사비 정산에 합의한다.

- 주요 사항 -

제1조(정산 조건)

① "을1"의 도급금액 정산 합의 금액

당초 도급계약금액	일금 칠백삼십이억오천칠백만원정(₩73,257,000,000-, VAT별도)	
공사비 감액분	피고 돌관공사비용모델하우스중복 공사비	일금 이십오억원정(₩2,500,000,000-, VAT별도)일금 육억오천만원정(₩650,000,000-, VAT별도)
변경 도급계약금액(최종)	일금 칠백일억칠백만원정(₩70,107,000,000-, VAT별도)	

당초 도급계약금액	일금 칠백삼십이억오천칠백만원정(₩73,257,000,000-, VAT별도)	
공사도급금액)		

② "을2"의 도급금액 정산 합의 금액

당초 도급계약금액	일금 이백사십이억원정(₩24,200,000,000-, VAT별도)	
공사비 증액분	돌관공사비용	일금 이십오억원정(₩2,500,000,000-, VAT별도)
변경 도급계약금액(최종 공사도급금액)		일금 이백육십칠억원정(₩26,700,000,000-, VAT별도)

③ 변경된 공사비에 대하여 사업주와 시공사는 별도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본 정산합의서로 갈음하며, 더 이상의 증액 혹은 감액 공사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기타사항)

① 본 합의서는 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2017년 6월 28.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및 여타 합의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도급계약을 적용한다.

② 사업주와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서에 근거한 사업의 정산에 대하여 본 합의서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정하며, 추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사업주와 시공사간 합의에 의해 본 합의서는 작성되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3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사업주와 시공사는 각 1통씩 보관한다.

5) A는 이 사건 제1정산합의를 체결한 당일인 2020. 1. 20.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귀사에서는 공문을 통해 공동시공사인 피고에서 당사의 선행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추가 돌관공사비가 발생하여 귀사로 해당 금액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당사로 상기

추가 공사비 해결에 대해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4. 그러나 상기 돌관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고, 발생비용 또한 해당 항목별로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파악이 필요하여 수차례 공동시공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당사가 수신 받은 자료로는 돌관 비용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돌관비용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당사의 입장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5. 그러나 상기 현장의 정산 등 조속한 마무리와 당사의 자금 유동성의 문제로 인하여 해당 분쟁이 장기화 될 시 당사 및 귀사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F와의 관계에서는 당사의 도급금액에서 해당 돌관비용을 감액하는 것에 부득불 수용하여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종결하되, 공동시공사들 사이에서는 추후 돌관비용 관련 채권, 채무의 존재를 소송 등을 통해 확정하기로 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따라서, 당사는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별도로 체결되는 정산합의서에 따라 일응 피고가 주장하는 돌관공사비의 지급을 인정하되, 돌관공사비 관련 법률관계의 확정은 추후 소송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것이며, 본 공문, 위 별도 정산합의서 및 공사대금 완납확인 및 유치권 포기각서에 따라 피고와의 관계에서 돌관공사비 부분의 공사대금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마.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6. 4. 30. H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27,840,000,000원(A 계약금액 95,840,000,000원, 피고 계약금액 32,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2도급계약서

인천 서구 I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신축사업(이하 "본사업")과 관련하여 도급인 H(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 A(이하 "을1"이라 한다) 및 피고(이하 "을2"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며, (후략)

이 사건 제2도급계약 특수조건

제6조[공동 수급 이행 조건]

"을1"과 "을2"는 공동 수급인으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 시공사로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이행기로 한다.

① "을1"의 업무 및 의무

2. "을1"의 공사 범위는 토목, 건축, 조경 및 해당 공정 수행을 위한 가설공사(단, 제5조 "을2"의 업무범위 이외의 모든 공사)이다.

② "을2"의 업무 및 의무

2. "을2"의 공사 범위는 기계, 소방, 전기, 통신공사 및 해당 공정 수행을 위한 가설공사(단, 제4조 "을1"의 업무범위는 제외)이다.

③ 산업재해 발생시 "을1"과 "을2"의 재해 분담 조건

1. "을1"은 건축, 토목, 조경 및 해당 공정 수행을 위한 가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부담한다.

2. "을2"는 기계, 전기, 소방, 통신공사 및 해당 공정 수행을 위한 가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부담한다.

2) 한편,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8. 6. 20. H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30,230,000,000원(A 계약금액 94, 770,000,000원, 피고 계약금액 35,4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제2공사의 진행 경과

1) A는 2016. 5. 10.경 이 사건 제2공사에 착수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서 2018. 7. 19.경 피고의 감독 하에 작업을 진행하던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전면작업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제2작업중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8. 7. 안전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위 명령을 해제하였다.

사. 이 사건 제2공사의 준공 및 공사비 정산 합의 등

1) 이 사건 제2공사는 2019. 4. 30.경 준공되었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H은 2020. 3. 2.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비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제2정산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정산합의서

H(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 A(이하 "을1"이라 한다) 및 피고(이하 "을2"라 한다)는 2016년 4월 30.일에 체결한 인천 서구 I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신축사업 공사비(2018년 6월 20.일 1차변경계약 포함)를 아래와 같이 최종 합의한다.

▶ 계약서

5. 계약금액

계약 금액	일금 일천삼백이억삼천만원(₩130,230,000,000-, VAT별도)	일금 일천삼백이십억칠천만원(₩132,070,000,000-, VAT별도)	일금 일십팔억사천만원(₩1,840,000,000-, VAT별도)	최 종 합 의 금 액
A 계 약금 액	일금 구백사십칠억칠천만원(₩94,770,000,000-, VAT별도)	일금 구백오십구억칠천만원(₩95,970,000,000-, VAT별도)	일금 일십이억원(₩1,200,000,000-, VAT별도)	
피고 계약 금액	일금 삼백오십사억육천만원(₩35,460,000,000-, VAT별도)	일금 삼백육십일억원(₩36,100,000,000-, VAT별도)	일금 육억사천만원(₩640,000,000-, VAT별도)	최 종 합 의 금 액

▶ 공사비의 지급

- 이 사건 제2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2조 ②항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을1"과 "을2"의 공사비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단, 상기 "을1"의 공사비는 2019년 06월 24.일에 체결한

민원처리 합의서상의 시공부분 및 주요하자에 대한 관리사무소 등의 민원이 없을 것으로 "갑"이 판단될 때 지급하기로 한다.

▶ 기타 사항

- 본 공사도급 최종 정산 합의서 금액 이외에는 "갑"이 "을1"과 "을2"에 더 이상 지급할 공사비는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최종 정산 합의의 증거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아. A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및 흡수합병 등

1) A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3. 4. 7.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048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채무자 A의 대표이사 P이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P을 'P'이라 한다). 이에 P은 2023. 8. 14.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2)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개최된 회생채무자 A의 2024. 6. 10.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B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B이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이 되었다(이하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B을 'B'이라 한다). 이에 B은 2024. 7. 9.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3) 회생채무자 A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24. 7. 24.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고, A는 2024. 8. 13.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4) 원고(변경 전 상호: Q)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8. 29. A를 흡수합병하였고, 같은 날 상호를 C로 변경하였으며, 2024. 9. 12.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A, P, B, 소송수계 후 A,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7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R(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이하 통칭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청구

1) 주위적 청구(묵시적 정산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 청구) 이 사건 제1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기간은 약 21일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선행공정의 150일 공기 지연으로 돌관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500,000,000원 상당의 돌관공사비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고, 피고의 현장 책임자들과 발주자가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한 주간공정회의 회의록(을 제1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제1작업중지명령 전후의 공기 지연 기간은 약 1개월로서 차이가 없으므로(8면, 17면), 위 작업중지명령과 피고의 공기 지연 사이에는 별다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제1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해 후행 공정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150일은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것으로서, 지연된 공기는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는 급박한 자금 사정 상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속히 수령할 필요가 있었고, 공동시공사인 피고가 동의하여야 자금 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부득이한 조치로서 이 사건 제1정산합의[원고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비로부터 2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감액하고, 위 돈을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비 중 돌관공사비 명목으로 반영하여 증액하는 내용]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돈과 관련하여, (1) 발주자와의 관계에서는 감액된 원고의 공사비를 피고가 우선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2)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원고가 해당 공사비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정확한 돌관공사비의 산정 내지 협의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25억 원 중위 산정 금액을 초과한 공사비를 피고로부터 추후에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 즉 묵시적 정산 약정이 있었다. 그런데 감정인의 감정결과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돌관공사비는 498,3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차액인 2,251,700,000원[= 피고가 지급받은 돌관공사비 2,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피고가 실제 지출한 돌관공사비 498,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신탁계약의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자금집행요청서에 공동으로 날인한 후에야 자금집행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피고가 '2,500,000,000원 상당의

돌관공사비를 지급받아야만 자금집행요청서에 날인을 해 주겠다'고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제1정산합의 체결 무렵 이미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였고,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어음 결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도가 날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던 점, 발주자인 F 역시 법률적 리스크를 회피하고, 돌관공사비 산정 등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발주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정산합의에 응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점, 이 사건 제1정산합의는 원고가 피고에게 돌관공사비 상당의 공사비채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발주자인 F와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부담한 급부(피고에게 양도한 2,500,000,000원 상당의 공사비채권)와 피고가 부담한 반대급부(피고가 실제 지출한 돌관공사비 498,3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정산합의는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1)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제1정산합의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2) 이 사건 제1정산합의가 전부 무효가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 또는 발주자에게 원고의 귀책사유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발생한 돌관공사비 내지 추가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발주자인 F는 이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걱정한 돌관공사비, 즉 피고가 실제 지출한 돌관공사비(498,300,000원)를 내용으로 한 정산합의를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정산합의는 위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제1정산합의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2,251,700,000원[= 피고가 지급받은 돌관공사비 2,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피고가 실제 지출한 돌관공사비 498,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청구(손해배상청구)

원고, 피고는 각자가 수행한 공사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으므로(이 사건 제2도급계약 특수조건 제6조 제3항 참조), 원고가 피고의 공사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추가공사비 지출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명사고, 즉 산업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원고의 공사 또한 중지되었으며, 원고는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돌관공사 및 동절기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해당 추가공사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 원고가 지출한 추가공사비가 합계 264,330,000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산업재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상당인 위 264,33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1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작업중지명령이 2018. 6. 12. 내려졌다가 2018. 7. 2. 해제된 사실,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비 정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F에게 '필수 돌관비용에 대한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2019. 9. 20.자 내용증명과, '(돌관공사 기간을) 평균 23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피고가 돌관공사비 기간을 6개월로 산정한 근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2020. 1. 3.자 내용증명을 각 발송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1정산합의 체결 당일 F에게 '공동 시공사들 사이에서는 추후 돌관비용 관련 채권, 채무의 존재를 소송 등을 통해 확정하기로 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돌관공사비 부분의 공사대금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피고의 현장 책임자들과 발주자가 참여한 주간 공정회의 회의록에 2018. 3. 20.경 '당초 계획공기보다 10일 정도 지연 중(1면)', 2018. 5. 8.경 '(공정이) 현 시점에서 1달 정도 늦어진 현황임(8면)', 2018. 7. 31.경 '공정률 상 1달 공기 지연(17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측 담당자가 2018. 11. 27.자

주간 공정회의에서 '공기가 지연된 것은 맞으나 3개월 지연은 아니라고 사료된다(35면)', '일부는 맞지만 3개월은 아니라고 사료된다(36면)'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정산합의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제1정산합의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당초 도급계약금액 대비 감액 및 증액된 최종 공사도급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F와 원고 및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최종 공사비 정산에 합의한다', '변경된 공사비에 대하여 사업주와 시공사는 별도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본 정산합의서로 갈음하며, 더 이상의 증액 혹은 감액 공사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사업주와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서에 근거한 사업의 정산에 대하여 본 합의서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정하며, 추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합의서 말미에 각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산합의서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피고, F는 이 사건 제1정산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자 지급받을 공사대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작업중지명령에 따른 공사 중지 기간(21일)이 피고가 주장한 돌관공사 기간에 비하여 단기간이고, 주간 공정회의록에 언급된 공기 지연 일수가 위 작업중지명령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거나, 원고가 그러한 이유로 위 정산합의 체결 전 피고가 주장한 돌관공사비 및 돌관공사 기간에 대하여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위 정산합의서의 문언과 내용, 형식에 비추어 위 정산합의 자체는 당사자들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논의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제1정산합의가 잠정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위 정산합의 이후 사후적인 정산절차를 예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정산합의가 발주자인 F와의 사이에서는 확정적인 합의이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사후적인 정산절차를 예정한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한 것이라면, 문제되는 돌관공사비의 액수 등에 비추어 적어도 그러한 내용을 정산합의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합의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거래관행과 경험칙 상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정확한 돌관공사비에 관하여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정산하면 된다는 피고 측 관계자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제1정산합의에 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2024.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6면), 원고와 같은 전문 건설회사가 피고 측 관계자의 말만 듣고서, 어떤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상태로 사후 정산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제1정산합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제1정산합의 체결 당일 발송한 내용증명(갑 제14호증)의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것에 불과하고 그 수신인도 원고가 묵시적 정산 약정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아닌 F라는 점에서, 위 내용증명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정산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1공사의 발주자인 F가 M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M이 사업주체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9 내지 22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M에게 제출하는 자금집행요청서에 원고와 피고가 '자금집행 1차 동의인'으로 함께 날인한 사실, 원고가 2020. 1. 22.경 잔여 공사대금 23,329,066,800원(= 24,325,580,110원 - 부가가치세 996,513,31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20. 1. 22.부터 2020. 1. 31. 사이에 합계 18,977,688,135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어음결제 금액이 6,290,089,487원에 이르렀던 사실, 2020. 1. 31. 당시 원고의 계좌(KB증권(계좌번호 1 생략)) 잔고가 합계 2,494, 242,198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정산합의 체결 당시 원고의 계좌(KB증권(계좌번호 1 생략))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아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돌관공사비와 관련하여 '111일 간 돌관공사를 수행하여 정상공기 대비 37일을 단축하였고, 피고가 지출한 돌관공사비는 합계 498,300,000원(= 기계공사 돌관공사비 321,299,000원 + 전기공사 돌관공사비 177,001,000원)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감정서 33면 등).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정산합의 체결 당시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정산합의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할 의사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정산합의 체결 당시 원고의 계좌 잔고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였고, 일부 어음의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회사 규모, 기록상 확인되는 타 공사 내역(갑 제21, 2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정산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원고가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정산합의 체결 당시 경제적 원인으로 인하여 급박한 곤궁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1정산합의는 원고와 피고, F 사이의 상호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정산합의 당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또한 피고는 2018. 7.경부터 원고에게 '원고의 선행공정 지연으로 인해 피고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과 실행방법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고, 2018. 11. 27.경 개최된 주간 공정회의에서도 피고 측 담당자가 3개월의 공기연장 또는 이에 따른 돌관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원고의 선행공정 지연과 이에 따른 돌관공사비 지급 등을 요구해 왔고, 그 결과 돌관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정산합의를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공박한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지니고서 이 사건 제1정산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피고가 '25억 원 상당의 돌관공사비를 지급받아야만 자금집행요청서에 날인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거나, 발주자인 F가 이 사건 제1정산합의의 체결을 사실상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2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청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도급계약 특수조건 제6조 제3항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수행한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부담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감독 하에 작업을 진행하던 작업자가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이 사건 제2작업중지명령이 2018. 7. 19. 내려졌다가 2018. 8. 7.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23. 및 2020. 1. 15. 피고와 H에게 '설계도서 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비용 1,200,000,000원 및 이 사건

제2작업중지명령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 2,682,000,000원의 정산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2도급계약 특수조건 제6조 제3항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수행한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인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2도급계약상 각자 수행할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각자 수행한 공사의 범위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보상 문제 등에 관하여도 각자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정한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해당 산업재해로 인해 다른 공동시공사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공사비'까지 당연 부담 또는 배상하기로 정한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도급계약 특수조건 제6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이 부분 청구 관련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1)항과 같이 '위 특수조건 제6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위 조항을 언급하지 않고 '피고는, 피고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돌관공사비 등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피고가 위 특수조건 제6조 제3항에 따른 부담부분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돌관공사비 등 상당액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손해배상청구의 취지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선해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제2작업중지명령에 따른 공정 지연 등으로 돌관공사비나 추가공사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 금액은 발주자인 H과의 사이에서 공사대금액을 증액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H에게 이 부분 비용 정산을 요청한 것도 그러한 취지로 보인다.

나) 원고는 H에게, 2019. 9. 23.경 '공동도급사의 사망 재해로 인하여 돌관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이를 최종 공사비 정산 시 반영해 달라', 2020. 1. 15.경 '공동도급사 사망 재해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인한 추가 원가 투입분과 설계도서 변경 및 추가공사 비용을 정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다) 그 이후인 2020. 3. 2. 원고와 피고, H은 이 사건 제2공사 관련 공사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정산합의를 체결하였고, 원고는 공사비 1,200,000,000원을 증액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이러한 이 사건 제2정산합의의 진행경과 및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이 부분 추가공사비 상당액 역시 이 사건 제2정산합의로 인하여 모두 최종적으로 정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2정산합의에 따른 1,200,000,000원은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만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2020. 1. 15.자 내용증명에서 설계도서 변경 및 추가공사비용을 1,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제2정산합의서에 원고가 최종적으로 증액하여 지급받기로 한 1,200,000,000원의 근거나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제2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오영

판사이예솔

판사전현진

1) 피고가 2019. 11. 8. A에게 발송한 설명서에 '공기가 150일 지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설명서에 첨부된 '돌관공사비 산출 근거 설명서' 2항에 돌관공사 기간이 6개월(18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까닭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